#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45

발의연월일: 2022. 10. 18.

발 의 자:이주환·김용판·김학용

박대수 • 박성민 • 양금희

장동혁 • 전봉민 • 정동만

지성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일반법인과 달리 농지 소유 권리를 이 법 및 「농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받고 있음.

그런데 지난 7월 감사원이 공개한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농지 소유 권리를 이용한 농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농업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농지매매 목적의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이 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해산명 령 처분을 받은 농업·어업 법인의 임원은 또다른 농업·어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신설).

#### 법률 제 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이 법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이 법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제20조의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 1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6 각 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교체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지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입법 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농지법」을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또는 「농지법」을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 또는 「농지법」을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 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수에 이는 시라

7. 제20조의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
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